

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

우)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20/☎(02)3787-3500/팩스(02)3787-3522

문서번호 : 마이다스마케팅 1910-14 호

2019.10.30

수 신 : KEB 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

참 조 : 한국예탁결제원

제 목 : 소규모 판매펀드 정리에 대한 협조요청의 건(마이다스 1Top 사모주식투자신탁 제 1 호)

1. 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는 “마이다스 1Top 사모주식투자신탁 제 1 호”(이하 “펀드”)를 귀행을 통하여 판매한 바 있습니다.
3. 펀드 규모 과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펀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,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펀드를 해지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대상 펀드 개괄(2019.10.29 기준)

펀드명	마이다스 1Top 사모주식투자신탁 제 1 호
운용개시일	2008.09.18
운용규모	18 백만원
누적기준가	3,523.90(누적수익률 +252% 수준)
보수	총 연 0.30%(운용 연 0.10%, 판매 연 0.16%, 수탁 연 0.02%, 사무 연 0.02%)

나. 펀드 유지시 발생하는 문제점

- 펀드 규모의 과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움
- 펀드로 계속 투자시 고객 입장에서 연 0.30%의 보수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

다. 귀행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

- 잔존 수익자에 대한 전액 환매 안내

라. 향후 계획 및 일정

- 본 건은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여 금융감독원장 승인 없이 자산운용회사가 임의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
(근거조항: ㄱ.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 105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
ㄴ. 펀드 약관 제 42 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 항제 2 호)
- 잔존 수익자의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임의해지 예정

-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음

일자	진행 업무
2019.10.31 ~ 2019.11.05	-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공문 및 대고객 안내문 통지 - 판매사 승인 후 대고객 안내문 송부
2019.11.06 ~ 2019.11.11	- 수익자 환매 유도 기간
2019.11.12 ~ 2019.11.14	- 펀드 상환을 위한 환매 금지 기간
2019.11.14	- 펀드 상환 결산
2019.11.15	- 펀드 해지 및 상환대금 지급

첨 부: 대고객 안내문 1부. 끝.

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
대표이사 박정환



펀드 정리를 위한 대고객 안내문

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
2019.10.31

- 귀하께서는 당사가 운용 중인 “마이다스 1Top 사모주식투자신탁 제 1 호”(이하 “펀드”)에 가입 중입니다.
- 그 동안 이어진 수익자들의 환매로 인하여 펀드 규모가 18 백만원선으로 상당히 축소되어, 현재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이에, 당사는 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05 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 1 항’ 및 ‘펀드 약관 제 4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제 2 호’에 따라 펀드를 해지하고자 하오니,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펀드 해지 및 상환대금 지급에 관한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일자	진행 업무
2019.11.1 ~ 2019.11.11	- 펀드 환매 가능 기간
2019.11.12 ~ 2019.11.14	- 펀드 상환을 위한 환매 불가 기간
2019.11.14	- 펀드 상환 결산
2019.11.15	- 펀드 해지 및 상환대금 지급

- 감사합니다.

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
대표이사 박정환